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37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김동아 · 조인철 · 허성무
성일종 · 이광희 · 임호선
한정애 · 안도걸 · 김준혁
박홍근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 사건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구호조치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동물학대의 금지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의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의 보호조치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의료기관 이송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히 보장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동물을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같은 조 제20호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를 “도지사,”로, “구청장은”을 “구청장 및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로, “구청장이”를 “구청장 및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로, “구청장이”를 “구청장 및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로, “구청장은”을 “구청장 및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동물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이 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보호 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구조·보호에 관한 교육)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제5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구조·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동물을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같은 조 제20호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 <u>도지사</u>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u>도지사</u> ,----- <u>구청장</u> 및 <u>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u> --- ----- -----

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구청
장 및 경찰관서 · 소방관서의
장이-----

③ ---도지사,-----구청
장 및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이-----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 다만,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
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동물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
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구청
장 및 경찰관서 · 소방관서의
장은-----

----- . 다만, 경
찰관서 · 소방관서의 장이 동물
을 보호 중인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
조·보호 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u><신 설></u> 제97조(벌칙)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9. ~ 12. (생 략) ⑥ (생 략)	<u>제34조의2(구조·보호에 관한 교육)</u>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은 동물의 구조·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구조·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한 자 10.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